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경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5.

발 의 자 : 정경희 · 이인선 · 김성원
정우택 · 태영호 · 조명희
이채익 · 이현승 · 박성민
권명호 · 조수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최저생활수준의 유지가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지원 또는 자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하여 보호 및 자립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).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청소년”을 “청소년(이하 “이주배경청소년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청소년</u>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.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<u><신 설></u>	제18조(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청소년(이하 “이주배경청소년”이라 한다)</u>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 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.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② <u>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